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년 2월 26일

제안자 : 민경환의원 외 6

□ 제안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조문내용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시행자”용어의 신설(제2조제12호)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일부 수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안 제2조제4호)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
 -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 ⇒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제5조제2항제2호)
 - “시장재개발사업자” ⇒ “시장정비사업자”(제6조제1항제5호)

○ 제9조제2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으로,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를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로, 동항제9호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를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안 제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를 “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각각 수정한다.

- 안 제5조제2항제2호중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을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으로 수정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 안 제5조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홍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 소상공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중 중소기업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 사업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하생략)</p>	<p>제1조(목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1.“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1.(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2.<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구조개선지원계획”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p>	<p>3.“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3.“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11조제 4항 </p>	<p>4. <현행과 같음></p>	<p>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1조제 4항 </p>
<p>5.“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p>	<p>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p>	<p>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p>6.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에 관한법 </p>	<p>6.“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p>	<p>6.“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8. “상점가진홍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p> <p>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p>	<p>8.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p> <p>9.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p>	<p>8.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p> <p>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p>
<p><신설></p> <p>제3조(기금의 설치)①<생략>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 할 수 있다.</p> <p>제4조 ①<생략></p> <p>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시장 재개발 사업 지원자금 3.~ 5.<생략></p> <p><신설> ③<생략> ④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제34조</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삭제 3.~ 5.<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③<현행과 같음> ④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 제34조.....</p> <p>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3.~ 5.<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③<현행과 같음> ④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지원할 수 있다. 1.~4.<생략> 5 시장재개발사업자 6.~8.<생략> <신설></p> <p>②<생략> <신설></p> <p>제8조(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현) ①제4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또는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생략> ②기금중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현행과 같음></p> <p>1.~4.<현행과 같음> 5. 소상공인 6.~8<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중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8조(현행과 같음)</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1.~4.<현행과 같음> 5. 시장정비사업자 6.~8<현행과 같음> 9. 소상공인</p> <p>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중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8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현) ①제4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또는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현행과 같음>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2. 임시매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p> <p>3. 기타 시장 재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생략> <신설></p> <p>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해야하는 경우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2조의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p> <p><신설></p> <p><신설></p> <p>④제1호~제2호<생략></p> <p>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p> <p>4. ~ 6.<생략></p> <p>7.도 기업지원과장</p>	<p>③<현행과 같음></p> <p>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p> <p>1.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p> <p>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 사업</p> <p>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검토를.....</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p> <p>1.기금 출연, 기금 운용계획 수립, 결산 심의</p> <p>2.기금 융자 대상자 결정</p> <p>④제1호~제2호<현행과 같음></p> <p>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p> <p>4. ~ 6.<현행과 같음></p> <p>7.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팀장</p>	<p>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p> <p>3. 기타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현행과 같음></p> <p>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p> <p>1.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p> <p>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 사업</p> <p>제12조(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개정안과 같음)</p>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으로, 제2조제5호 및 제6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로, 동항제9호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각각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을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으로 수정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제5조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 소상공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 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 사업

제12조제1항중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친 후”를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를 거친 후”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12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 출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2. 기금 융자 대상자 결정

제13조제4항제3호중“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장”을“중소기업 중앙회충북지회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상점가진홍조합)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홍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3>

③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

④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 ①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③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
- ④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 ⑤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지원)

-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 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0.12.23, 2006.3.3, 2007.1.26>

1.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단체
2. "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장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 나.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 다.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바. 다목 내지 마목의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관·단체나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 "협업"이라 함은 다수의 기업이 제품개발·원자재구매·생산·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설치<개정 2001.12.31>)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